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사무원 〉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장

□ 최종합격자 명단

근무예정지	지원코드	채용예정분야	응시번호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수도권문화유산센터) 및 화성시 마하리 고분군 발굴현장	고고-2	특별연구원 나급 (선임연구원 고고학)	고고2-02
	고고-3	연구원 (고고학)	고고3-03
			고고3-07
	행정	사무원 (행정)	행정-01

□ 예비합격자 명단

근무예정지	지원코드	채용예정분야	예비번호	응시번호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수도권문화유산센터) 및 화성시 마하리 고분군 발굴현장	고고-2	특별연구원 나급 (선임연구원 고고학)	1	고고2-01
	고고-3	연구원 (고고학)	1	고고3-06
			2	고고3-10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퇴직 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번호 순서에 따름.

□ 임용일

○ 임용일: [2026. 7. 1. \(수\)](#)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및 방법: 2026. 6. 5. (금) 18시까지(직접 또는 우편제출)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제출서류 목록

- ①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군경력 포함)
-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확인서)
- ③ 기본증명서 1부(상세)
- ④ 반명함 사진(3x4) 이미지 파일(jpg)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zooarch5@korea.kr)
- ⑤ 통장사본 1부(급여지급용 계좌)
-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1] 참조)
- ⑦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2] 참조)
- ⑧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 3] 참조)
- 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4] 참조)

□ 공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의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채용담당자(02-739-6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2.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붙임 4]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채용방법 제한/ 일반 경쟁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대행(수탁)사업 협약에 따른 신규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